

한국복지대학교 학칙

제정 2002. 3. 2.(규정 제 1호)	개정 2002. 7.18.(규정 제 21호)	개정 2003. 3. 1.(규정 제 31호)
개정 2003. 7.11.(규정 제 39호)	개정 2004. 3. 8.(규정 제 45호)	개정 2005. 6.17.(규정 제 58호)
개정 2006. 1.25.(규정 제 64호)	개정 2007. 1. 2.(규정 제 70호)	개정 2008. 9.19.(규정 제 87호)
개정 2009. 2.17.(규정 제102호)	개정 2009. 4.22.(규정 제104호)	개정 2010. 4.23.(규정 제163호)
개정 2011. 4.19.(규정 제200호)	개정 2011.12. 8.(규정 제207호)	개정 2012. 9.24.(규정 제227호)
개정 2012.11.29.(규정 제283호)	개정 2013. 6. 7.(규정 제301호)	개정 2013.12.26.(규정 제331호)
개정 2014. 9.18.(규정 제343호)	개정 2014.12.26.(규정 제348호)	개정 2015. 3.11.(규정 제352호)
개정 2015. 4. 8.(규정 제357호)	개정 2015. 6.16.(규정 제369호)	개정 2015. 9. 3.(규정 제375호)
개정 2015.10. 7.(규정 제378호)	개정 2015.12. 2.(규정 제388호)	개정 2015.12.30.(규정 제389호)
개정 2016. 4.29.(규정 제406호)	개정 2017. 2.27.(규정 제431호)	개정 2017. 6. 1.(규정 제441호)
개정 2017. 8.17.(규정 제445호)	개정 2018. 2.12.(규정 제479호)	개정 2018. 2.23.(규정 제484호)
개정 2018. 7. 6.(규정 제495호)	개정 2018. 11.13.(규정 제503호)	개정 2019. 7. 2.(규정 제527호)
개정 2020. 2.10.(규정 제548호)	개정 2020. 5.19.(규정 제552호)	개정 2021. 2.25.(규정 제596호)
개정 2022. 1. 4.(규정 제617호)	개정 2022. 3. 15.(규정 제618호)	개정 2022. 8. 2.(규정 제626호)

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

제45조(졸업)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,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졸업증서에는 교과과정 상의 전공을 표기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7.>

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110학점(2년제 과정 80학점)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27.>, <개정 2018.11.13.>

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는 13학점 이상, 전공교과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27.>, <개정 2018.2.23.>

④ 졸업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.

⑤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어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1년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. <신설 2017.2.27.>